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23

2020. 3. 3.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3.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 관련 기구의 직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2부시장 소속의 행정기구인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변경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2)

나.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정비함(안 제41조, 안 제47조 및 별표1)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4월 1일자로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관련 직제를 변경하고,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강북소방서의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추진 배경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 예방·진압에서 재난 구조·구급과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1], 재정여건으로 인한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음[2].

○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방안'(2017)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조직, 재정, 후생복지, 복무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소방공무원 신분 관련 4개 법률과 재정 관련 2개 법률을 제·개정(2019.11.19.)하여, 4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대 추진방향>

①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투자격차 해소** 적극 추진 ②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 및 지휘·통솔권 유지** ③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은 차질 없이 확충**

※ 출처 :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방안'(2017.10.26.), 행정안전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 신분관련 : ① 「소방공무원법」, ② 「지방공무원법」,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④ 「소방기본법」 ▶ 재정관련 : ① 「지방교부세법」, 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1.1. 시행)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2017.10.26.)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은 45,352명으로 소방청 소속 국가직이 560명(1.2%), 시·도 소속 지방직이 44,792명(98.8%)이며, 소방예산은 국가이전재원 4천억원(국가부담 10%),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원 3.8조원(지방부담 90%)으로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을 시·도가 부담해 왔음.

2) 법정인력 대비 현원의 편차를 나타내는 '현장 부족 인력률'은 서울이 6.1%로 가장 낮고, 충북이 51.3%일 정도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음.

3) 하위 법령인 15개 대통령령과 부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개정을 앞두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임용권의 일부[4]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음.

-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 시책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로 신설하고, 소방청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간의 지휘·감독관계를 정비하며,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였음.

-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하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하였음.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1.1. 시행)을 제정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를 설치토록 하고, 각 계정의 세입·세출 항목과 비율을 규정하였음.

---

4) 시·도별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소방정감), 소방학교장(소방준감)의 임용권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됨.

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강원도 산불 등과 같은 대형재난에서 국가의 책임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음.

○ 「지방자치법」 상 소방업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자치사무인 점을 고려해 지역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국가책임성 강화와 지방분권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그 밖에 조직, 인사, 예산, 후생복지, 지휘체계는 현재와 변함없이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부정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 전환이라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재정지원 대상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2만명 충원인력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소방장비와 시설 등 소방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해소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라. 소방재난본부의 시장 직속기구화(안 제4조, 안 제5조의2)

○ 「소방기본법」이 소방본부를 시·도지사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하여 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행 행정2

부시장 소관이던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역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제16조), 소방본부장을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여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제50조).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소방본부를 부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로 두는 경우, 재난발생시 단체장 책임 하에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음.

○ 이에 소방본부를 시·도지사의 직속기구로 격상함으로써 단체장의 책임과 통솔 하에 지역 단위의 재난대응능력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됨.

마. 소방기관의 주소 현행화(안 제42조, 안 제47조 및 별표1)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119 특수구조단'과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가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된 '강북소방서'의 주소를 정비하고 있음.

○ 소방행정타운은 노후·이원화된 소방 교육훈련시설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안전서비스 공급 확대와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로,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건립하여 2018년부터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훈련시설 등을 이전·집적하였음.

< 서울시 소방행정타운 시설 개요>

❍ 위치/규모 : 은평구 진관동 110-26(통일로 1031일대, 부지 48,950㎡, 연면적 30,005㎡)
❍ 기간/예산 : 2014~2019년 / 2,349억 (부지 1,523억, 건축 등 826억)

추진단계	사업대상	규 모	건축비
1단계 (2014～2018)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6개동, 7개 시설 (25,175㎡)	687억
2단계 (2018～2019)	전문훈련시설*	4개동, 4개 시설 (4,830㎡)	139억

* 전문훈련시설 : 건축물(지하철, 붕괴·도시탐색, 목조문화재)화재와 구조물(차량, 화생방, 실화재) 화재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시설

- '119 특수구조단'은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수난·산악사고 대응 등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봉구 방학동에서 은평구 소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음(2018.8.28.).

-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과 임용예정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교육 훈련, ▸소방전문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서초구 서초동에서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음(2018.10.1.).

○ 한편, 강북소방서는 신설 당시(2012년) 임시 도로명 주소인 '강북구 보건소길 2'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도로명 주소가 '강북구 한천로 911'로 결정되어 조례상의 주소가 다르게 표기되어 왔음.

○ 소방관련 주요 시설의 부정확한 입법 정보 제공은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제약하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관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 변경된 주소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바. 종합의견

○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 하에 지역 간의 소방력 격차를 해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된 소방서비스를 확보하고, 복합·광역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조직, 인사, 예산, 후생복지, 지휘체계의 대부분은 기존과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어,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국가직화의 목적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평상시와 유사시에 따라 각각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원활한 소방방재 활동을 위해서는 지휘·통솔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국가직 전환과정에서 인력확충과 소방인프라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비지원 예산이 신규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서울시 소방예산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예정된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재정 분담 조정과정에서 지역의 소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의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3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 관련 기구의 직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2부시장 소속의 행정기구인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변경함(안 제4조 및 제5조의2)

나.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정비함(안 제41조, 제47조 및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 「소방기본법」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0. 1. 16. ~ 1. 20..)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를”을 “물순환안전국을”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며,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진압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서초동)”를 “은평구 통일로 1031-25(진관동)”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를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35조제2항 관련)”을 “(제37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강북소방서의 위치란 중 “보건소길 2”를 “한천로 91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며,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예방·진압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를 둔다.	② ---------- 물순환안전국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제20조 (생 략)	제5조의2 (현행 제20조와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41조(설치) ① (생 략)
② 소방학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서초동)에 둔다.
제47조(설치) ① (생 략)
②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에 둔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h>관할구역</th></tr><tr><td colspan="3">(생 략)</td></tr><tr><td>강북소방서</td><td>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길 2(번동)</td><td>강북구 일원</td></tr><tr><td colspan="3">(생 략)</td></tr></table></td><td>제4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은평구 통일로 1031-25(진관동)----------.
제4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7조제2항 관련)
<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h>관할구역</th></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강북소방서</td><td>---------- 한천로 911---</td><td>강북구 일원</td></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소속을 변경(행정제2부시장 소속 → 시장 직속)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 2133-6724)